



즉시 배포용: 2017 년 6 월 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과속 단속 주간(SPEED WEEK)” 동안 주립경찰이 과속 운전자들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는 수 십만명의 사람들과 사망에 이르는 42,000 명이 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경찰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과속 차량과 난폭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1 주일에 걸친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과속 단속 주간 캠페인(Speed Week campaign)은 오늘부터 6 월 13 일까지 이뤄집니다. 작년 2016 년 6 월 과속 단속 주간 캠페인(Speed Week campaign) 당시, 주립경찰은 21,000 건이 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통위반 티켓 중 10,000 건 이상은 과속 위반과 관련된 것이고 600 건 이상은 주의가 산만한 운전에 대한 것이며 200 건 이상은 차선양보법(Move Over)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속과 무모한 운전은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동은 뉴욕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립경찰은 우리 도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을 무시한 운전자들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여름의 “과속 단속 주간” 동안, 주방위군은 표시가 되어 있는 뉴욕경찰차량과 비노출 교통단속(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CITE) 차량을 단속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비노출 교통단속(CITE) 차량을 이용하면 방위군이 운전 중 법을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이동 차량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을 켜면 긴급 차량으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 주립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캠페인과 연중 집행의 목적은 과속 관련 자동차 충돌 사고를 줄이고 뉴욕의 도로에서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방어적인 운전을 할 경우 치명적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고 고속도로에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자동차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집행 부커미셔너인 Terri Egan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 위원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부 (DMV) 및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GTSC)는 우리의 도로 안전을 최대한 지키고, 이 구명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공약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시즌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약물이나 알코올에 마비된 상태로 운전하지 않으며 주의가 산만한 운전을 피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책임감있는 운전자가 됨으로써 여러분은 티켓이나 체포를 피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사망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구하는 생명이 당신 자신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과속은 뉴욕주내 모든 치명적 충돌의 거의 1/3 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42,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수 십만명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교통 사고가 3 세에서 33 세 사이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연중 단속 이외에 과속 단속 주간을 진행하는 한 주 내내 모든 차량의 과속을 비롯하여 기타 교통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방위군은 또한 부주의한 운전자나 장애를 입은 운전자,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차량 동승장, 뉴욕주 차선양보법(Move Over) 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포함해 다른 교통 위반사항들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시속 55 마일(mph) 제한 속도 고속도로 속도위반 벌금 또는 시속 65 마일(mph)라고 표시된 지역 속도위반 벌금

1 번째 위반 시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최소 45 달러/최대 150 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 달러/최대 300 달러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 달러/최대 600 달러

2 번째 위반 시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최소 45 달러/최소 300 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 달러/최대 450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 달러/최대 750 달러

3 번째 위반 시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최소 45 달러/최대 525 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 달러/최대 675 달러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 달러/최대 975 달러

법원 할증료

타운 또는 빌리지 법원 - 93 달러
기타 법원(시 교통 법원, 등) - 88 달러

위반 벌점 구조

제한 속도에서 1-10 mph = 3 점

제한 속도에서 11-20 mph = 4 점

제한 속도에서 21 - 30 mph = 6 점

제한 속도에서 30 - 40 mph = 8 점

제한 속도에서 40 mph 이상 = 11 점 (운전 정지 사유)

과속 단속 구간을 위한 자금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의 교부금에서 제공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